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보유 근거 마련〉

■ 유용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019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 최근 4년간 주요 방산물자 수출계약 현황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유용원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4. 11. 28.
3. 회부연월일: 2024. 1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산수출 증대로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홍보 및 자체 R&D, 개조개발 목적으로 무기체계 및 장비를 이용해야 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 소유 시제품이나 군 전력화 장비를 대여하여 이같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 지속적인 군 장비 대여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있으며 방산업체에는 정부·군 소유의 물자 대여에 막대한 대여료 지출과 관리상의 부담 등이 따르고 있는 현실임.

이에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홍보 및 자체 R&D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5항제8호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국방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하는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1조(방위산업지원) ①·② (생략) <u><신 설></u>	제41조(방위산업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국방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부담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하여 이를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u>
<u><신 설></u>	<u>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62조(벌칙)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제62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7.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신설> ⑥ (생략)	8.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하여 보유한 자 ⑥ (현행과 같음)

□ 현행 「방위사업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정부는 방산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국가가 보유한 방산물자의 양여·대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 작전 및 전력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산물자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대부 등을 할 수 있음.

그리고 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라 군수품에도 해당¹⁾되는데, 「군수품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항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²⁾에서는 군수품을 일정한 조건에 따라 국방부

1) 「방위사업법」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방위산업물자”라 함은 군수품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 ①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제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제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군수품관리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 제1항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군수품관리법」 제14조(대여) ①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의 제조, 수리, 그 밖의 시공(施工)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을 대여할 것을 약정(約定)한 경우에는 군수품을 대여할 수 있고,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양도)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외국 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4조를 준용한다.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14조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방산업체 등에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대여·양도하려는 군수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백히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군수품의 종류, 대여·양도 이유 및 대여·양도를 받을 자 등이 포함되어 있음.³⁾

「군수품 관리 훈령」 제40조에서는 군수품 대여의 기준으로 ‘국방관서 및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무상 대여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⁴⁾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⁵⁾ 대여 기간은 대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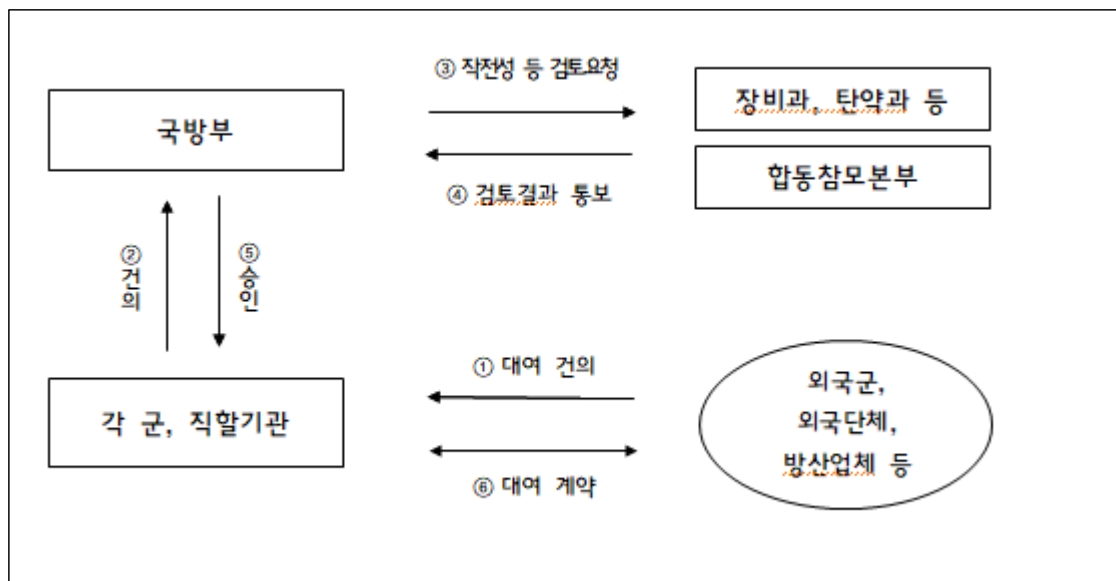
제2항 및 제15조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외국의 정부에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2. 대여 또는 양도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 세금감면 등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수품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경우
- 3)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승인 신청) ①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이 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에 따른 군수품의 대여 또는 양도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그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군수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종류별,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2. 대여 또는 양도의 구분
 3. 무상 또는 유상의 구분
 4. 대여 또는 양도하려는 이유
 5. 대여 또는 양도의 시기와 대여기간
 6. 대여 또는 양도에 관한 부대조건
 7. 대여 또는 양도를 받을 자
- 4) 「방위사업법」 제45조제4항
- 5) 「군수품 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40조 (대여의 기준 및 방침) ① 군수품은 「군수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관서 및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대여할 수 있다. ② 군수품의 대여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 대여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에 할 수 있다. ③ 소모성 물자는 원칙적으로 대여를 금지하되 국가적 차원에서 이익이 될 때는 동종·동량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며, 상환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자산가액을 선납받아 국고세입 조치한다.

기간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방산업체 등은 정부로부터 방산물자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받아 수출 등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방산물자 등 군수품 대여 절차는 다음과 같음.

[군수품 대여 절차]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재구성

□ 최근 우리나라가 세계 방산시장에서 주요 방산수출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그 만큼 K-방산 홍보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⁶⁾ 방산

④ 군수품의 대여 기간은 대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며, 2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탄약, 수출품, 홍보전시용품, 국산화 개발, 교육실습용 등 상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와 그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2년 이상 대여 할 수 있다.

⑤ 대여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대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군수품을 대여한 기관은 대여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승인권자에게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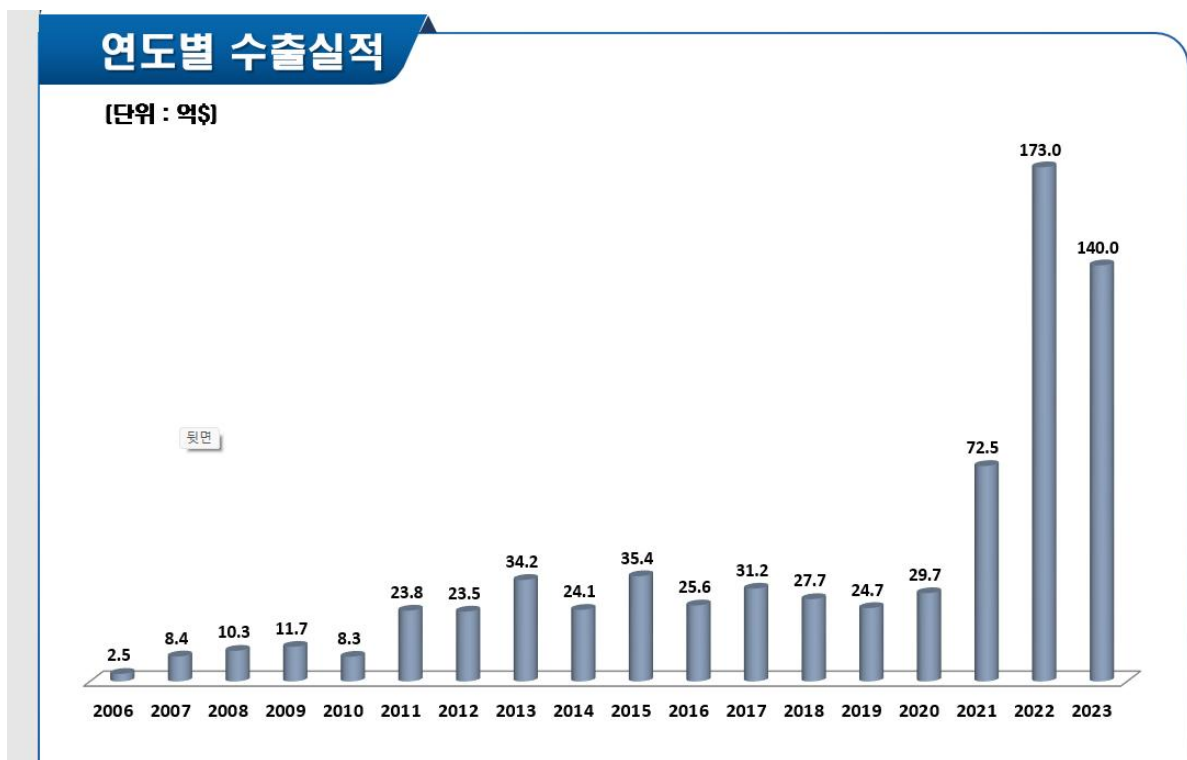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8조(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6) 우리 정부는 최근 폴란드와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수출계약을 체결을 완료한 후 루마니아에 신궁, 페루에 함정, 호주에 장갑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동유럽, 중동, 미국 등 방산수출 대상국과 방산품목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업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및 개조개발을 위하여 기존 방산물자를 연구자료로 활용할 필요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음.

최근 10년간 방산수출 현황을 보면, 2013년 34억 2,000만 달러에서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4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은 수출 수주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최근 방산물자 수출계약 현황]



*자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현재 국방부는 방산업체에 방산물자를 대여함으로써 방산수출 및 방산물자 대여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으나, 각군의 입장에서는 무기체계 등 방산물자의 지속적인 대여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있으며, 방산업체측에는 대여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적시에 방산물자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방산물자 대여에 따른 군의 전력 부담을 줄이고, 방산업체가 신속하게 수출 홍보·전시와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임. 다만, 다음의 점도 추가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서는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하려면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방산물자 대여 제도와 달리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는 무기체계의 무단 반출 등의 위험으로 인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요건과 관련하여 개정안에서의 보유 목적인 ‘수출 홍보 또는 국방연구개발 등’ 외에 추가적인 승인 요건과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승인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방산업체에서 자체 생산·보유한 방산물자의 보유 목적이 소멸되거나 승인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불법적 활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은 방산물자 폐기 등 처분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하위법령 등에 마련하여 방산물자를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방산업체 자체 부담으로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무상대여 방식보다 방산업체에 비용부담이 증가하여 오히려 방산수출 지원 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최근 방산물자 대여현황을 보면, 2025년 1월 기준으로 항공기 233대, K2 전차 1대, K9 자주포 9대 등 1,795대이며, 주로 교육·전시 및 연구개발 목적으로 대여하고 있으나, 2024년도 방산물자 대여료 총수입은 5억 3,200만원⁷⁾에 불과하여 물품가액의 연 5%를 부과하는 대여료 산정기준,⁸⁾ 방산물자 가격 및 대여 개수를 고려하면 매우 적은 금액으로서 이는 현행 방산물자 대여가 대부분 무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임.

따라서 각군의 전력 손실을 완화하면서 방산업체의 방산수출 수요에 대한 신속대응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여제도는 유지하면서 방산업체의 선택에 따라 방산물자를 자체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7) 2022년도 4억 5,300만원, 2023년도 4억 8,900만원으로 2024년도와 비슷한 수준임.

8) 「군수품 관리 훈령」 제43조(대여료의 산정) ① 군수품의 유상 대여시 대여료는 물품가액의 연 5% 이상 국고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산업체에 수출을 위하여 군수품을 대여할 경우 대여료는 연 2%를 적용할 수 있다.

[방산물자 대여 현황(2025.1.10. 기준)]

대여품목	수량	대여 사유	유·무상 여부
항공기 (F-5B, F-5E, H-19, O-1G 등)	233	교육/전시용	무상대여
IO-360ES 엔진	5		
클라이더	1		
퇴역위봉함	986		
퇴역 S-2E	1		
퇴역 화산함	535		
K2 전차	1	외국 방산전시회, 기념행사	유상대여
K9 자주포	1		
차륜형장갑차	2		
천무발사대	2		
K21 보병전투차량	2	연구개발, 시험평가	대부분 무상대여
K9 자주포	8		
K55A1 자주포	4		
견인포	5		
곡사포	7		
비호복합	1		
국지방공레이더	1		
합계	1,795	-	-

*자료: 국방부

□ 한편, 형사처벌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하여 보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개정안 제62조제5항 제8호는 엄격한 방산물자 관리 필요성을 고려할 때 형벌의 종류와 처벌 수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12

※ 참고자료

[최근 4년간 주요 방산물자 수출계약 현황]

계약연도	수출대상국	수출품목	계약금액
2021	인도네시아	T-50	2.4억불
	필리핀	초계함	5.4억불
2022	폴란드	K2 전차(1차)	33.6억불
	폴란드	K9 자주포(1차)	24.0억불
	폴란드	천무(1차)	35.5억불
	폴란드	FA-50	30.2억불
2023	말레이시아	FA-50	9.2억불
	튀르키예	전차 부품	2.9억불
	루마니아	신궁	-
	호주	레드백 장갑차	25.0억불
	폴란드	K9 자주포(2차)	26.7억불
2024	폴란드	천무(2차)	16.4억불
	페루	함정 건조	4.7억불
	앙골라	2.75인치 유도로켓 발사대	0.1억불
	루마니아	K9자주포	10억불
	미국	지원함 정비사업	-

*자료: 방위사업청